

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5.12.30]
(전부개정) 2025.12.30 규칙 제129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지역활력추진단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-880-284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부사업 및 지원기준) 「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5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신청 및 지원절차)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·면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 신청내용과 지원기준 등을 확인하고,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5일까지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·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읍·면장은 별지 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지원사업의 환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한 하동형 육아수당(이하 “육아수당”이라 한다)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

2. 「아동수당법」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아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육아수당이 지급된 경우

3.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조건을 미충족한 경우

4.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아동수당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환수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5.6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5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출산장려금, 쌍둥이이상 등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수당은 폐지한다.

②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전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, 종전의 출산장려금이 더 유리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